

삶의 마무리: 자율성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제 14차 노인인권포럼

2023. 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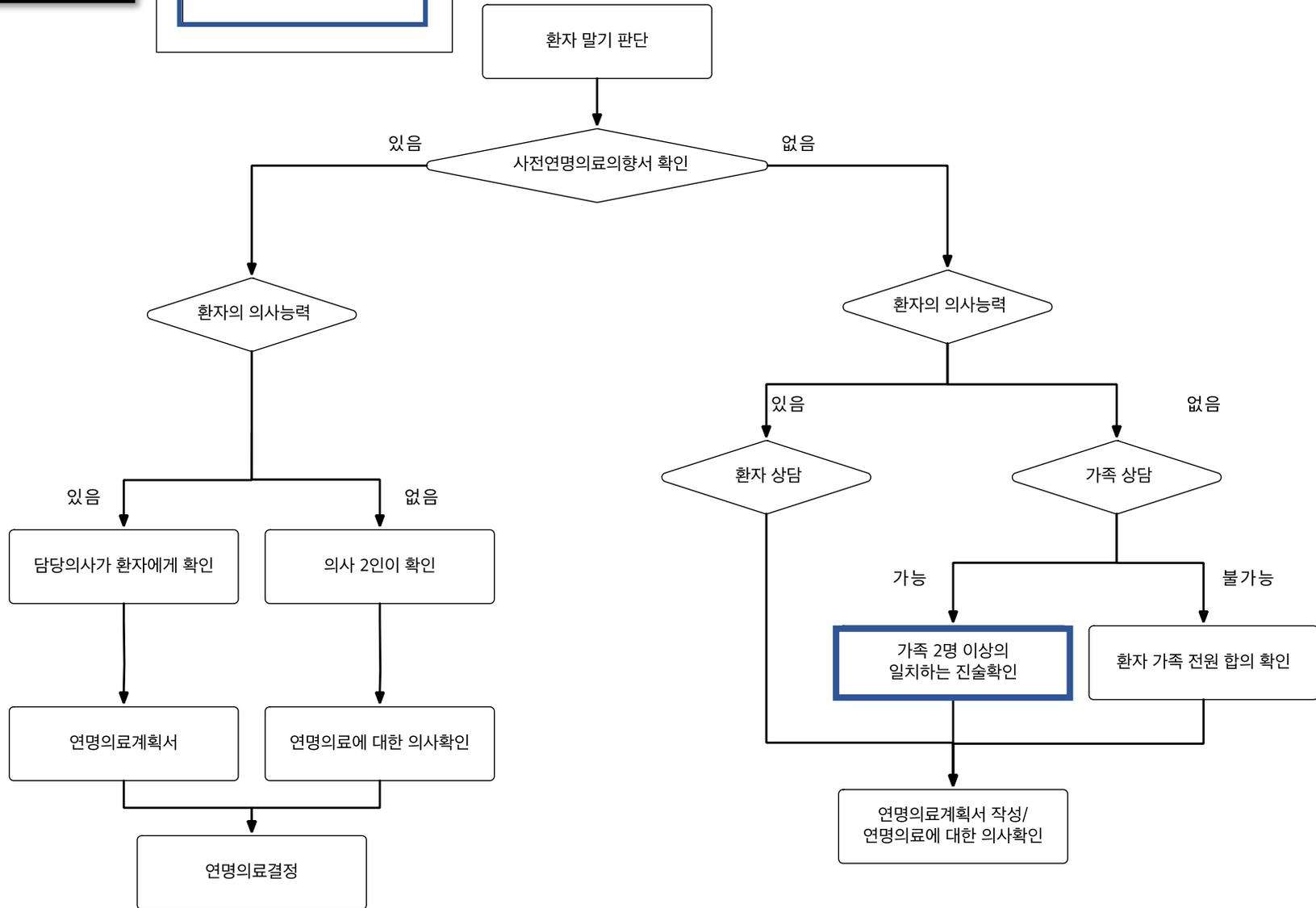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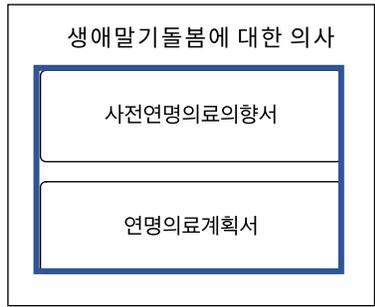
자율성

- 내외적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
- 의료의 핵심 가치: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추구
-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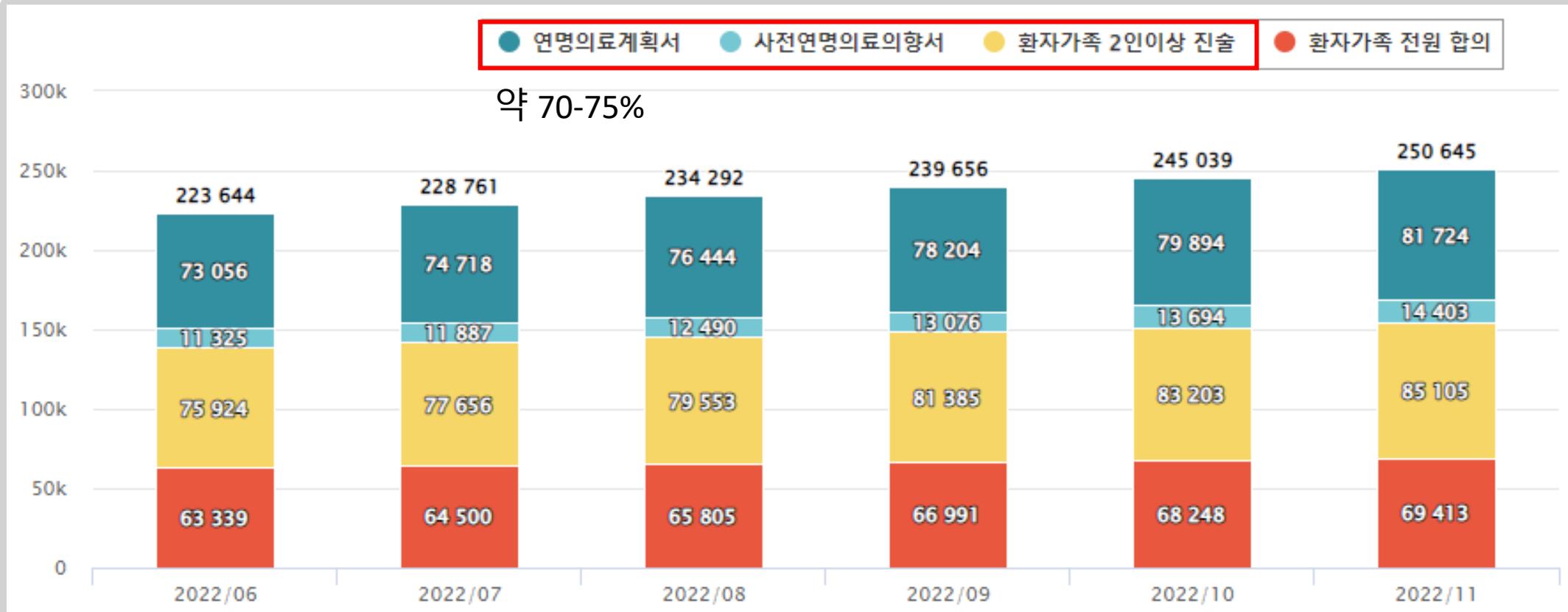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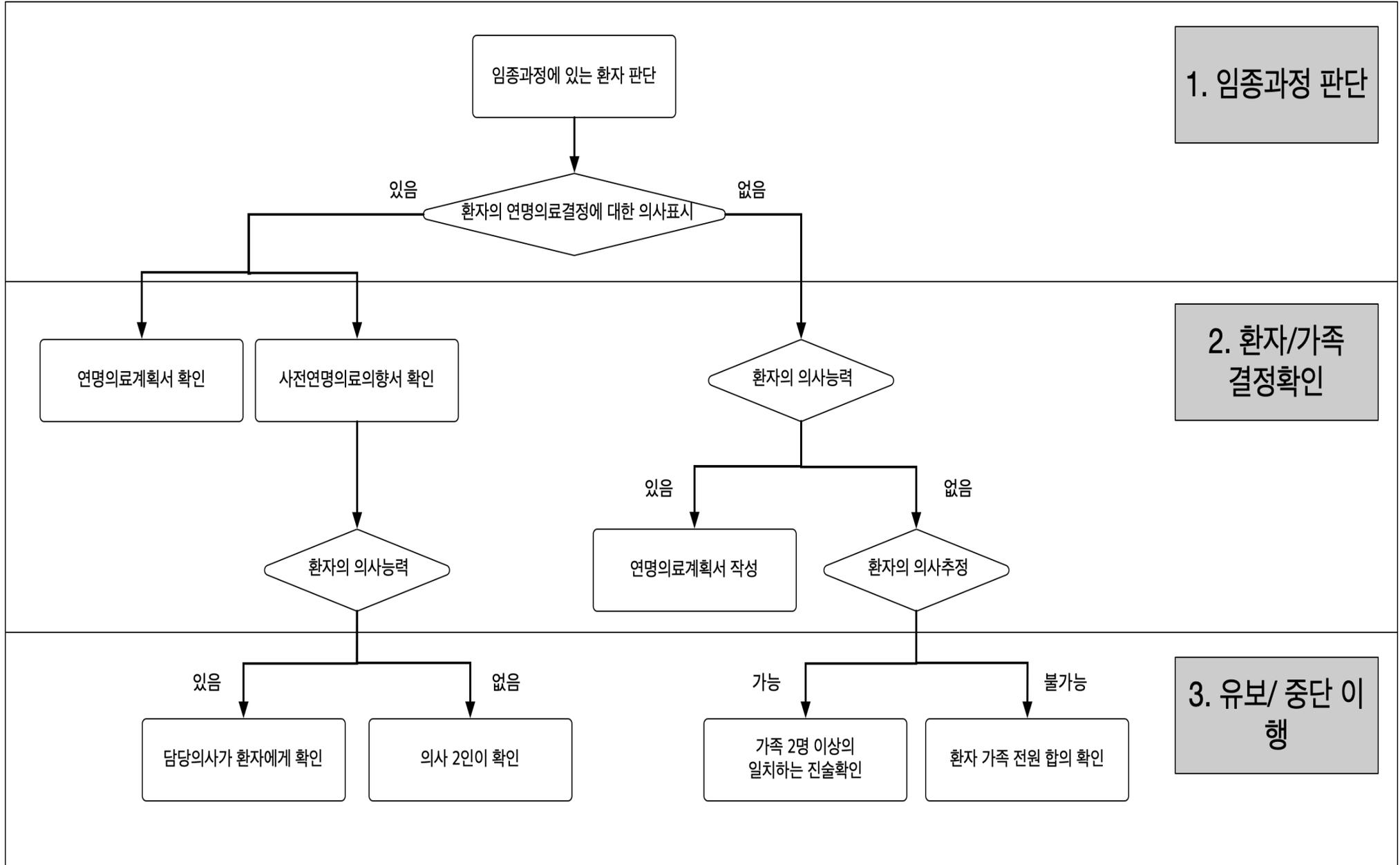
현행법에 따른 자율성 작동 방식



연명의료 결정 현황: 자기결정권 이행 비율



현행 연명의료 결정 이행 방식: 임종과정 판단이 우선



말기와 임종과정:

말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법 제 2조 제 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POLST 작성**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법 제 2조 제 2호): **연명의료 중단**

현행 연명의료 결정 이행 방식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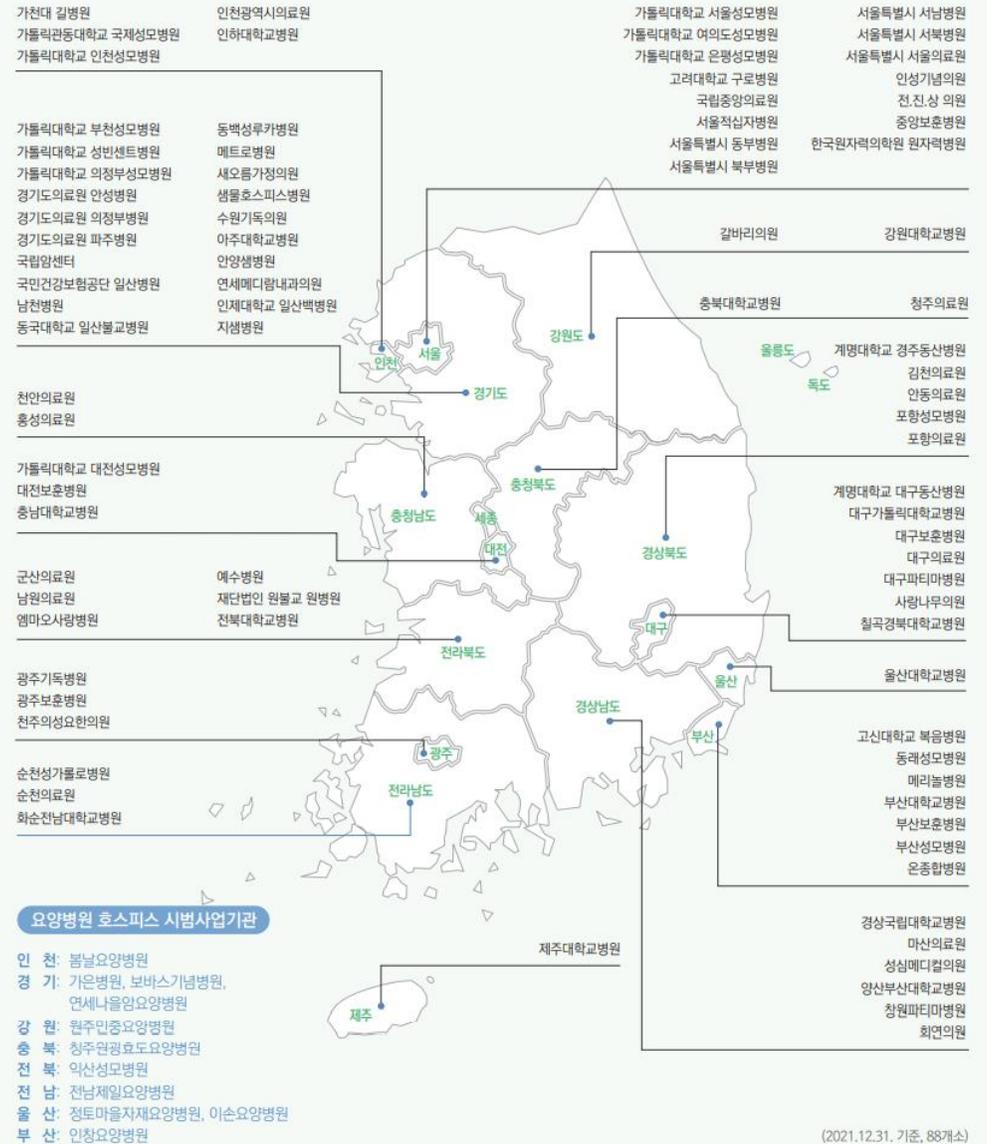
- " 말기 " 와 " 임종과정 " 으로 구분
 - 의료기관 유형(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의 차이에 따른 연명의료 결정 방식의 차이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이 침해
 - 진료 현장의 혼란: 이렇게 구분한 해외 국가는 없다.
- 결정 시기와 이행 시기의 간극 발생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 의료기관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사망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어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 :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 만성호흡부전
- 만성간경화

2021년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환자의 자율성 존중 범위:

「안녕완화의료조례」	「환자 자주 권리법」	「연명의료결정법」
<p>[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의료의향을 존중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p>[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의료 자주권을 존중하고 편하게 사망할 권익을 보장하며, 조화로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함 	<p>[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p>[제3조,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기환자 	<p>[제3조,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기환자, 비가역적인 혼수상태, 영구적인 식물상태, 극 중증의 치매, 그 밖에 고통을 참기 어렵거나 질병이 회복될 수 없고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적절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인 환자 	<p>[제2조,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자료: 대만 행정원 법무부 법령검색시스템(<http://law.moj.gov.tw/>), 대한민국국회 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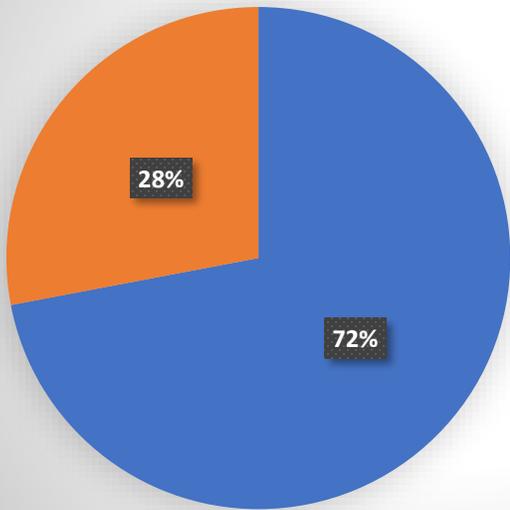
자료: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제 13호 2021

우리나라와 대만의 연명의료 결정 방식 비교

	대한민국						대만	
관련법률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환자자기결정권법
서식 명칭	연명의료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시행 규칙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 서(환자가족 진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행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전 선택의향서	사전의료결정서 (預立醫療決定書)
작성자	의사 (말기 환자와 상담)	성인 등록자	의사 2인	의사 2인	의사 2인		환자 본인과 증인 2명	환자본인과 증인 2명 또는 공증인
등록	○	○	기록의무	기록의무	기록의무		○	○
연명의료결정 지시	○*	○*	○*			○ 이행내용	○***	○****
임종완화선택	○**	○**	○**			○**	○	○
호스피스선택	○	○	X			X	○	
열람허용 선택	○	○	X			X		
대리인지정	X	X					○	○
기타	설명내용과 그 확인	설명내용과 그 확인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 존재 확인	일관된 의사표현 확인	의사확인 방법: 연명의료지시의 이행내용		인공영양공급에 대한 결정을 건강상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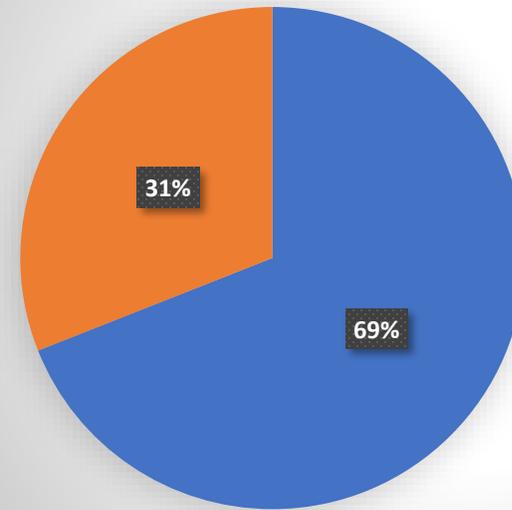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본인)



- 연명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연명의료를 받는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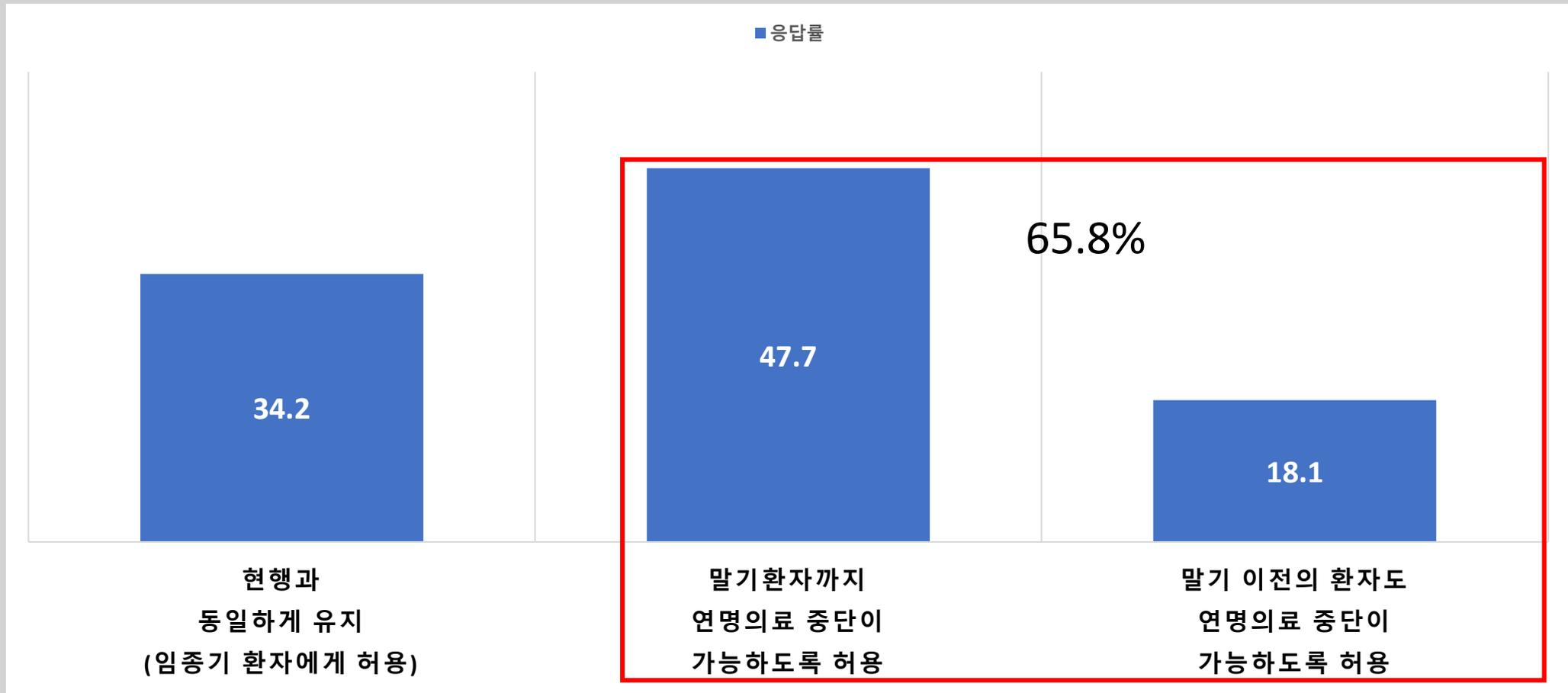
- 연명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연명의료를 받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조사.

URL: <https://www.epeople.go.kr/nep/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Page.npaid>

(조사기간: 2022. 9. 28. ~ 10. 11, 설문 참여: 총 6,200명(일반국민 3,008명, 국민패널 3,1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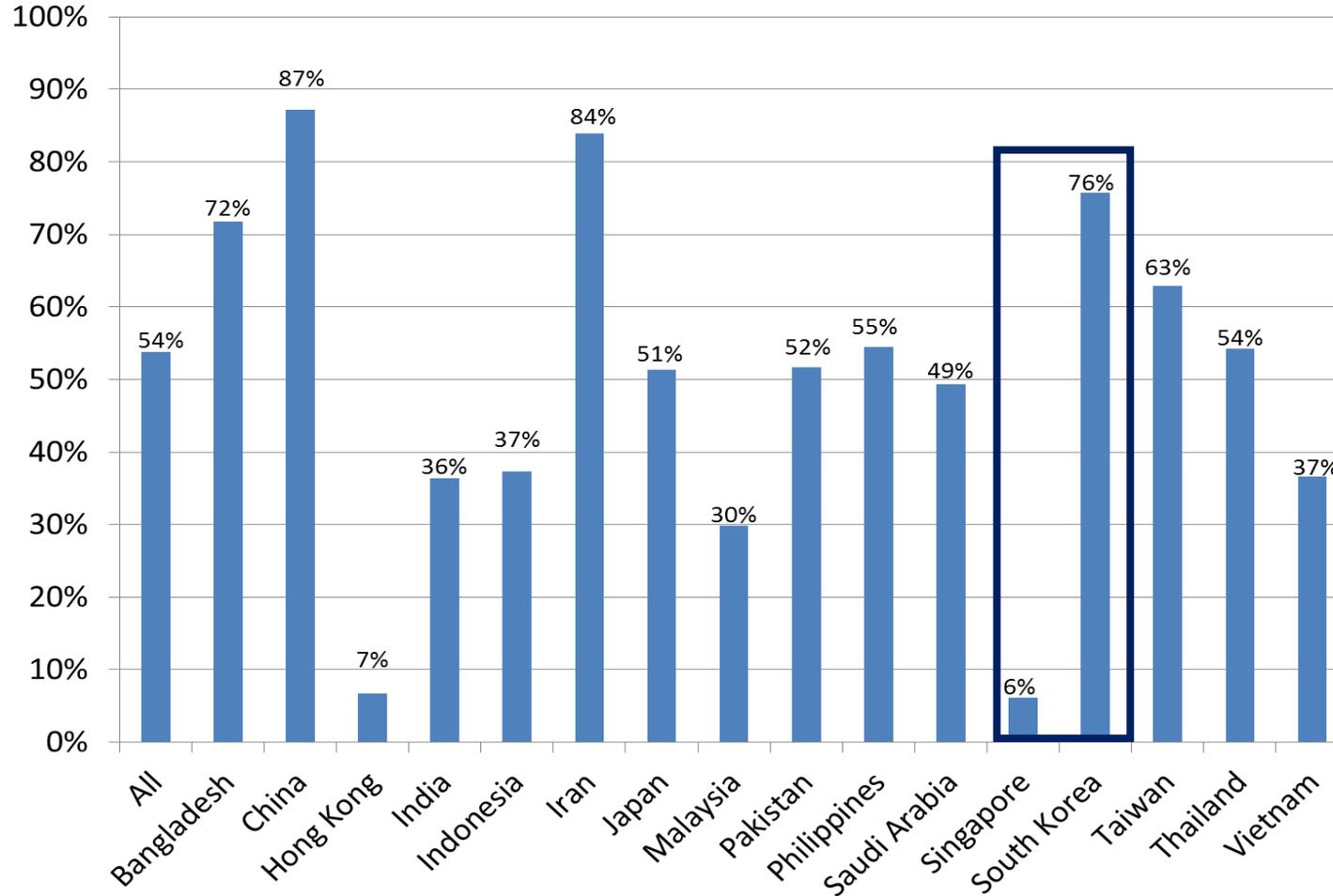
연명의료 결정 이행 시기에 대한 국민 인식



남용에 대한 우려?

국내 중환자의사들의 연명의료 결정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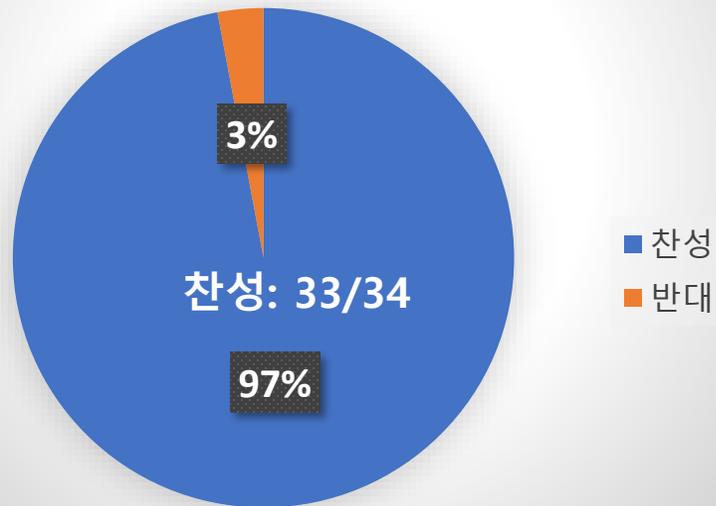
뇌손상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서 패혈성 쇼크시 기계환기나 승압제 사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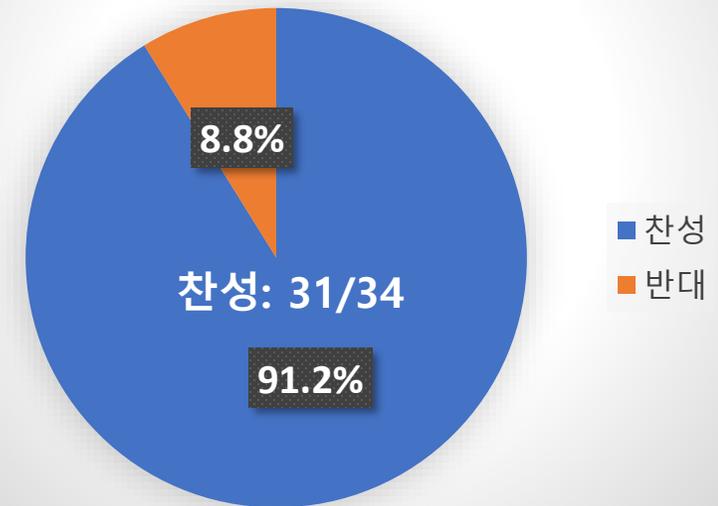
Proportion of Respondents by Country who Would Maintain Mechanical Ventilation and Start Antibiotics and Vasopressors for the Patient with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in the Event of Pneumonia with Septic Shock.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학회 인식: 이행시기를 말기로 확대할 경우에 대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말기가 아닌 시점에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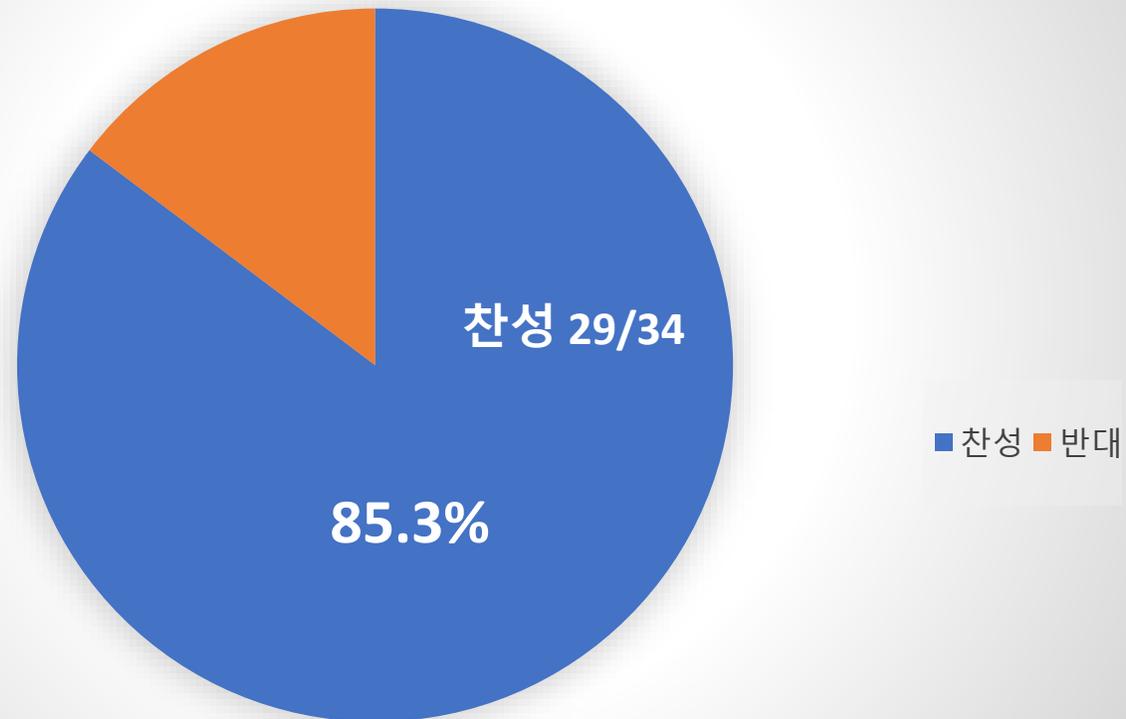


현 연명의료결정법의 말기환자 정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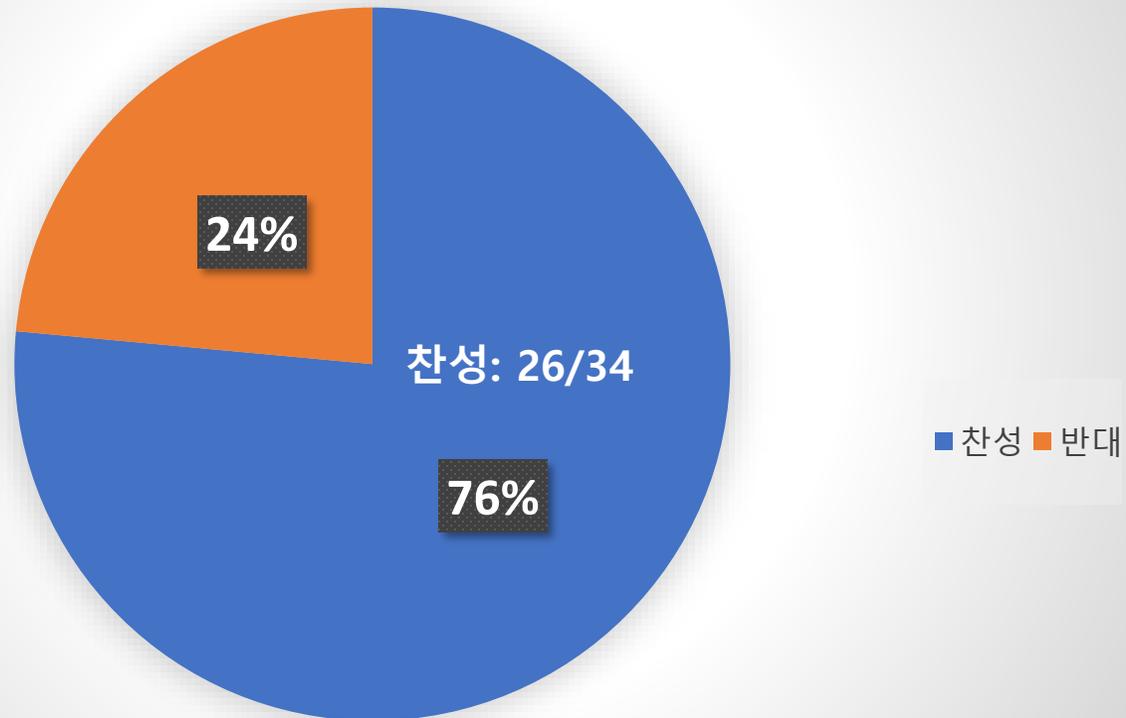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학회 인식:
환자 의사를 가족 2인이상의 진술로 추정될 때도 이행 시기를 말기로 하는 것

가족 2인 이상의 추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에서도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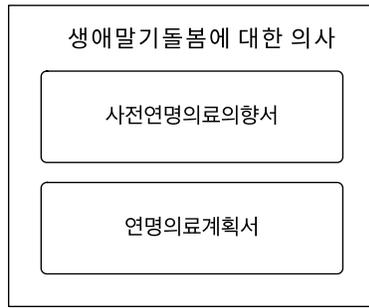
연명의료 결정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학회 인식: 환자 의사를 모를 때 가족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에서도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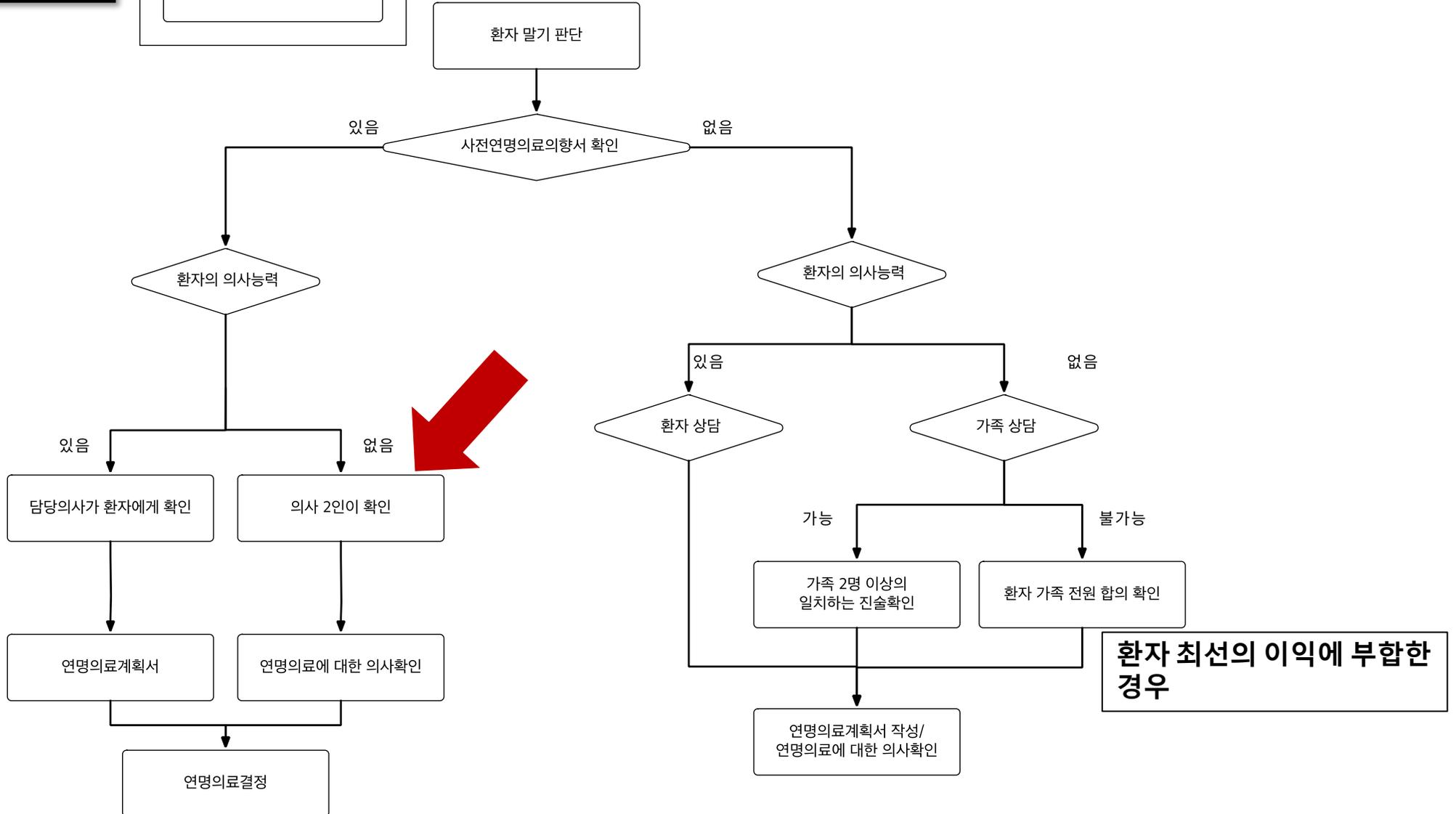


현행법 개선 방향 (대안 1)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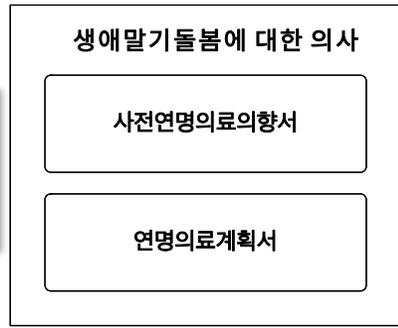


말기에 결정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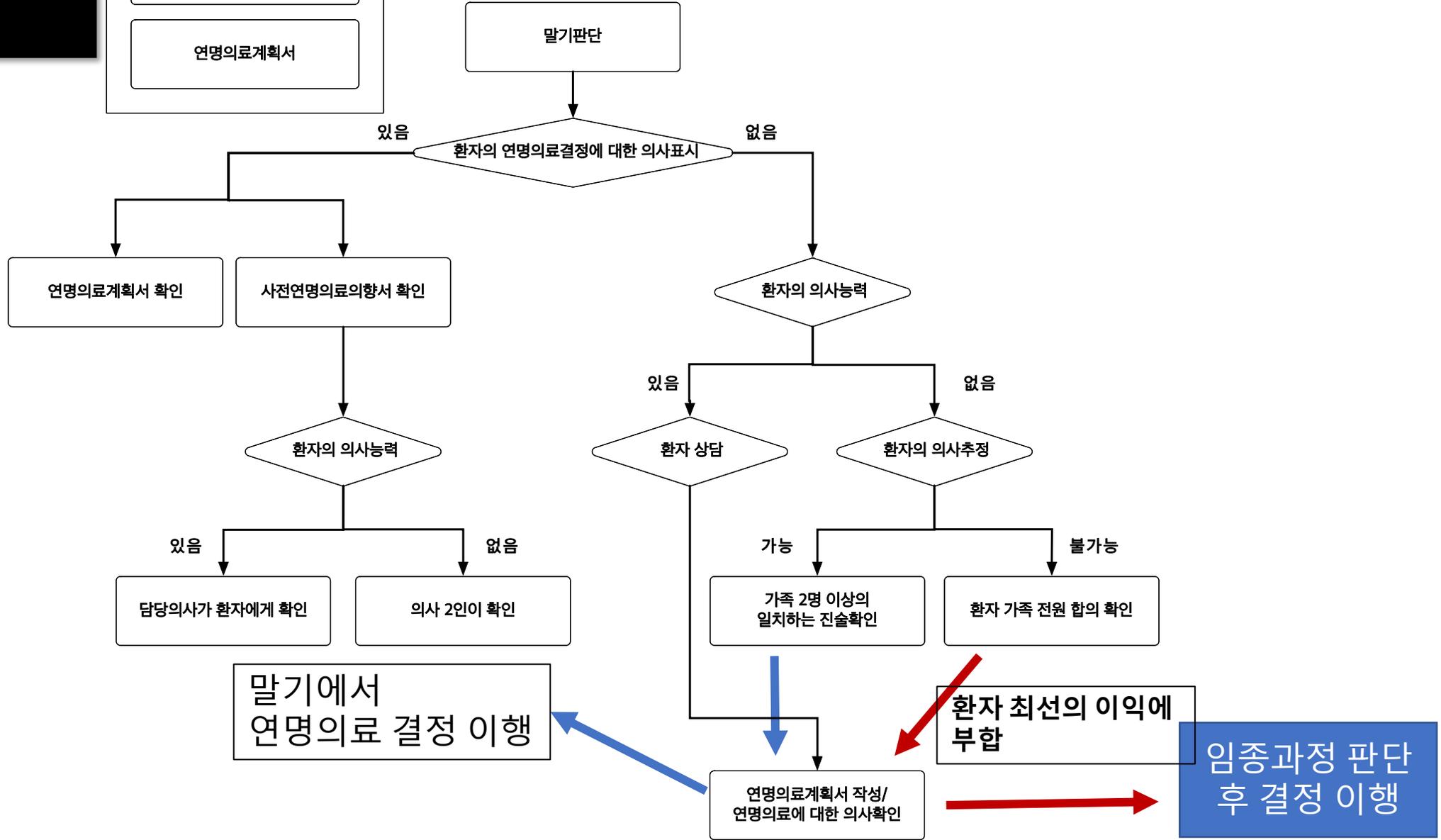


현행법 개선 방향 (대안 2)

대안 2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결정 이행



예상되는 효과

- 생애말기돌봄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환자가 원하는 최선의 이익 구현**
- 말기에 연명의료 이행을 의논하게 됨으로써 실질 **숙려기간 확대**
-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혼란 감소**(법률안 1안의 경우)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는 관련 맥락들에 대한 사회 합의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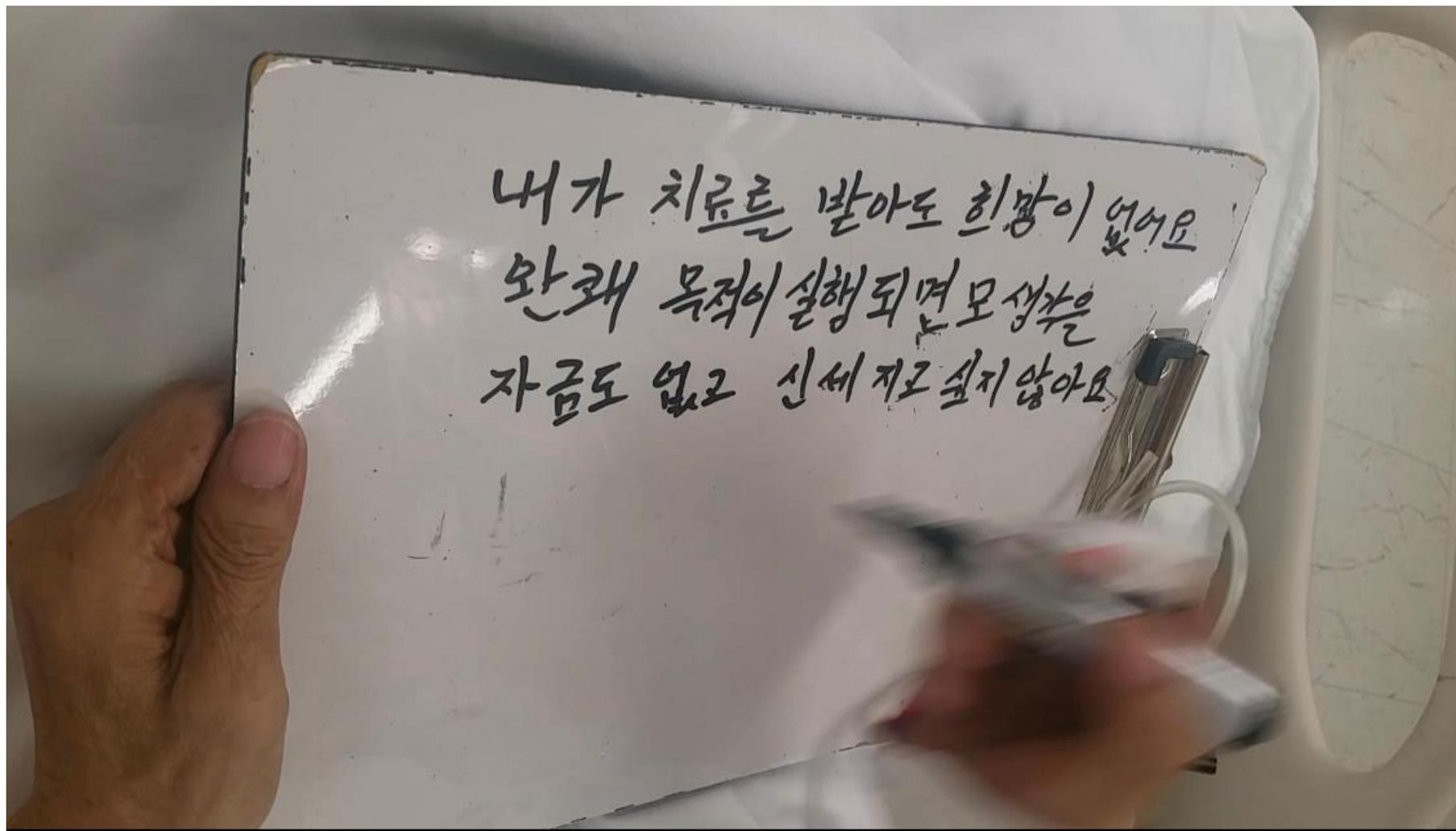
기타 보완점 제안

- 의료기관윤리기관위원회가 없는 요양기관의 AD 확인 절차 개선
- 서식 간소화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과 전문 인력 확충
- 의료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대상 생애말기돌봄 교육 강화
- 영유아, 소아,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방식 제고
- 적법 대리인 제도 도입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의료 현장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가 의료 비용으로 인하여 치료 중단 경험(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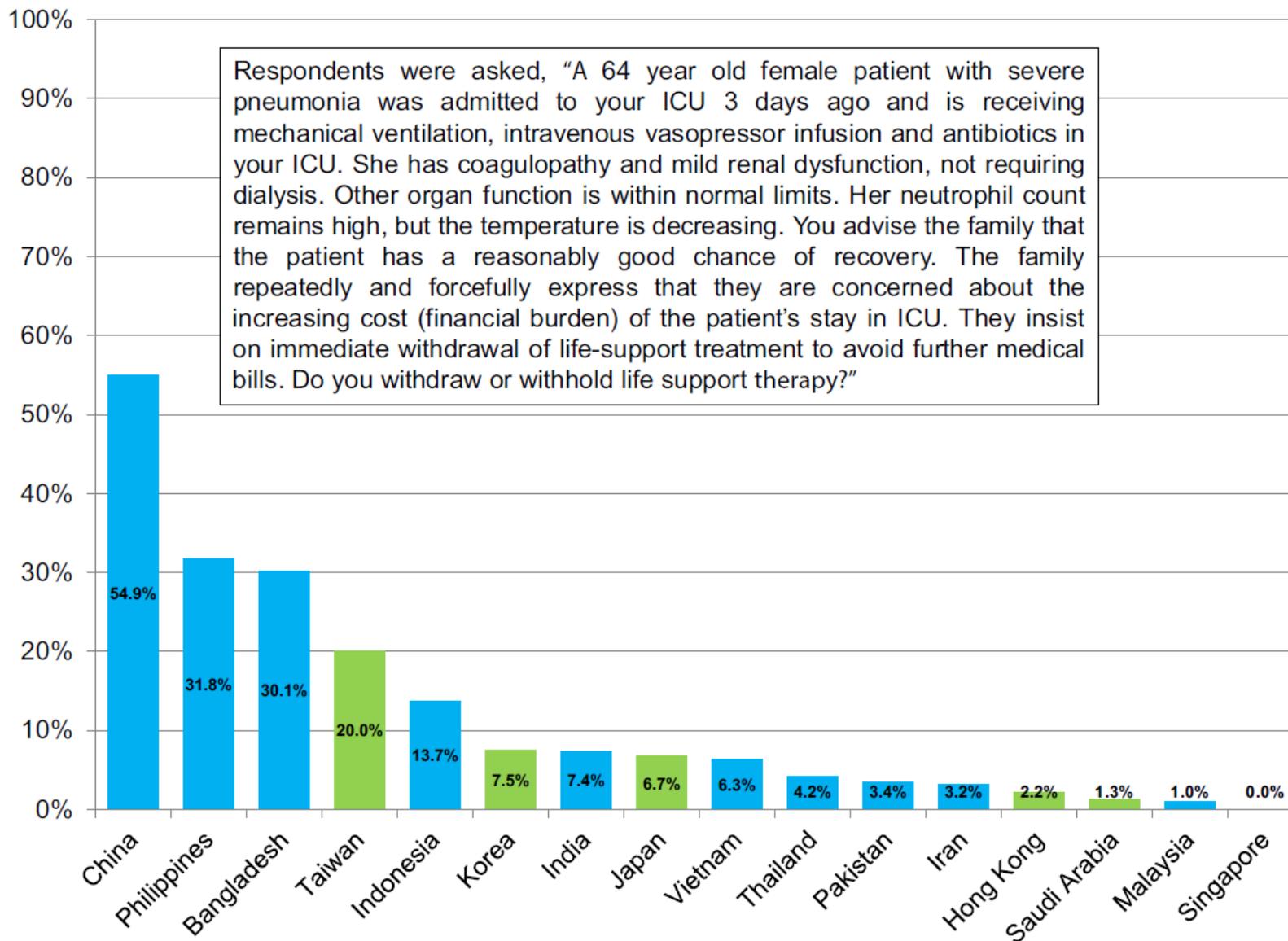


Fig. 4 Proportion of respondents by country and region who would almost always or often withhold and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this case scenario. *Blue bars* refer to low-middle-income countries and regions. *Green bars* refer to high-income countries and regions

‘조력존엄사’ 법안 합의점

- 임종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
- 자의 임종을 보조하는 의료행위의 정당성
- 자의 임종에 대처하는 의료계의 준비: 완화의료 뒷받침
- 제안되었던 ‘조력존엄사’ 법안의 내용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보완이 우선**